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1월 29일, 김윤덕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1년 2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1.04.27.)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2.01.04.)

상정 · 소위원회부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2.05.17.)

상정 · 축조심사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3.03.16.)

상정 · 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3.09.13.)

상정 · 축조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3.12.2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01.25.)

상정·소위 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윤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을 주요업무로 함.

2015년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더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42개 조문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7개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1) 목적(안 제1조)

가.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 제1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설립 목적 및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강을 규정한 것임.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공간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의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음.

나. 검토의견

안 제1조는 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강을 규정하면서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의 공사의 설립 목적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안 제1조의 공사의 설립 목적이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사의 사업 범위와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민간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1조의 공사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사 설립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과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규정 및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안 제6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함께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공사의 등기 및 정관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안 제2조부터 제5조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등기, 사무소 및 정관 등 공사 설립의 기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를 옮겨온 것임.

공사의 설립을 위한 등기, 사무소 및 정관은 공사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지역본부·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등 입법례¹⁾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 등 부설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사의 사업(안 제6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6조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공사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와 비교하면, 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되고,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됨.

나. 검토의견

안 제6조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현재 공사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와 일부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였음.

이에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공사의 사업 범위가 민간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정안에 따른 공사의 사업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사의 사업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규정,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 등 공익 달성을 위한 공사의 업무 수행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등 민간 사업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3)은 공사의 전체 사업 영역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여 공사의 사업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²⁾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사업 범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173)

제14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공사의 임원 및 직원(안 제7조 및 제8조)

안 제7조는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정원, 사장의 대표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중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한 것임.

안 제7조제4항은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³⁾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8조는 공사의 직원 임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대리인 선임 규정⁴⁾이나 「국토안전관리원법」 등 입법례⁵⁾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②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4)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공사의 재정(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사의 재원으로 보조금, 수수료, 차입 및 채권 등을 규정하고, 공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업연도 말의 잉여금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

먼저 공사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규정한 **제9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공사는 ①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 사업 수익금, ④ 차입금, ⑤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및 ⑥ 그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됨.

이 중에서 **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는바, 공사가 공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출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제2호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의 경우 정부 외의 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기부금의 형태보다

6)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보조금의 형태로 자금을 교부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외의 자가 공사에 기부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법」의 예⁷⁾를 참고하여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대신 ‘보조금’을 공사의 주요 재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안 제12조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⁸⁾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외에 고시한 바에 따라서도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공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등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 7.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수수료 등)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한편, 안 제14조는 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의 소멸시효를 5년, 이자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舊 「국채법」의 소멸시효⁹⁾ 규정이나 「국토안전관리원법」¹⁰⁾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자에 대한 2년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¹¹⁾ 기간인 3년보다 짧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을 수 있고, 현행 「국채법」은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¹²⁾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마지막으로 제15조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

9) 舊 「국채법」(2005. 4. 28. 법률 제7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한다.

10)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3조(채권의 발행)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1)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2)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나 「민법」에서는 공사의 잉여금 처리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행 공사 정관에서도 단순히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¹³⁾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잉여금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이월손실을 보전한 나머지 잉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월손실을 보전한 나머지 잉여금은 차기(다음 회계연도)로 ‘이월’¹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참고¹⁵⁾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3)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제15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생긴 잉여금 및 결손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14) 공사의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서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15)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6) 공사에 대한 재산상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안 제16조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7조는 공사의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먼저, 안 제16조에 따라 공사가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사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사가 실제로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¹⁶⁾하여 제정안에 따라 공사가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021. 4.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어떠한 사업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¹⁷⁾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공사에 국유 재산특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17조는 공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登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¹⁸⁾이나 도시철도채권¹⁹⁾ 등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18) 「주택도시보증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登記·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登記·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려는 취지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²⁰⁾과 국토안전관리원²¹⁾에 대하여 채권 등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다만, 국가철도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기관의 지출 총액에서 자체 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방식’²²⁾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기관이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채권의 발행자인 국가(정부)²³⁾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²⁴⁾으로서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 현행 「도시철도법 시행령」이나

20) 「국가철도공단법」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21)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22)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함(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 부지침, 24페이지)

23)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²⁵⁾되어 있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5)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 라. 금융회사
- 마. 주한 외국정부기관
- 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7) 자료 제공의 요청(안 제18조)

안 제18조는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함.

공사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으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하기 보다는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²⁶⁾에 따라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자료의 범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위한 경우로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요청 대상 기관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공사에 대한 감독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규정을 가져오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한 경우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음.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²⁷⁾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에서 정한 형벌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안 제2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²⁷⁾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9) 부칙

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다만, 제정안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공사 소속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정안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연속성을 가지는지 불분명하고, 제정안 시행 당시 공사의 임원의 임기가 곧바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지 등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른 입법례²⁸⁾를 참고하여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2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4545호, 2018. 1. 18. 시행) 부칙 제12조(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2663호, 2014. 12. 31. 시행) 부칙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 설립되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정안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제정안의 시행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²⁹⁾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³⁰⁾하는 조항이 제정안에도 반영(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된바, 제정안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에서 공사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³¹⁾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의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 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1)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김정재)

이 법의 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업무영역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목적 규정, 사업의 범위 등을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정부 출연금을 삭제하며, 그 밖에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일부자구를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수정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이 법의 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업무영역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목적 규정, 사업의 범위 등을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정부 출연금을 삭제하며, 그 밖에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규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에서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사업 중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를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하고,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을 삭제하며, “지적 측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사업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을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수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사업만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사업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6조).

다.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하고,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기부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함(안 제9조).

라.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리.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이사회”를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로, “부설기관(연구원, 교육원 등)·지역본부·지사 또는 사무소를”을 “지역본부, 지사·사무소 및 연구원·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로 한다.

안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을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령에”를 “법률에”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기부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공사는”으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를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로,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를 “3년으로 완성한다”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중 “적립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6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를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중전의 제18조)제2항 중 “따라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안 제18조(중전의 제20조) 중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을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으로 한다.

안 제21조(중전의 제23조) 중 “제20조를”을 “제18조를”로 한다.

안 제22조(중전의 제24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u>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u> ----- ----- ----- -----.
제4조(사무소) ① (생략) ② 공사는 <u>이사회</u>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연구원, 교육원 등)· <u>지역본부·지사 또는 사무소</u> 를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소) ① (원안과 같음) ② ----- <u>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u> ----- ----- <u>지역본부, 지사·사무소 및 연구원·교육원 등의 부설기관</u> ----- -----.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u>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u> 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 -----. 1. ----- ----- ----- <u>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u> ----- ----- -----

가.·나. (생략)	가.·나. (원안과 같음)
2. ~ 5. (생략)	2. ~ 5. (원안과 같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 -----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7. -----법률에----- ----- --
8. (생략)	8. (원안과 같음)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 ----- ----- -----.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삭제>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1. ----- ----- ----- ----- -보조금
3. ~ 6. (생략)	2. ~ 5. (원안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 -----

<u>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u>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u>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u>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u>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u> <u>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u> <u>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③ (생략) ④ <u>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u> <u>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u> <u>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u> <u>한다.</u> ⑤ (생략)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 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 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u>적립하여</u> <u>야 한다.</u>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u> <u>따라</u>----- -----.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 <u>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u> <u>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u> <u>여</u>-----. ② <u>공사는</u>-----<u>채권</u> <u>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u> <u>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u> <u>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u> <u>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u> <u>의하여야 한다.</u> ③ (원안과 같음) ④ <u>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u> <u>부터 기산하여</u>----- -----<u>3년으로 완성한다.</u> ⑤ (원안과 같음) 제15조(잉여금의 처리) ----- ----- ----- ----- -----<u>하여야</u>----- -----. <삭 제>
--	---

<u>국가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u>제17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u> <u>공사가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u>	<u><삭 제></u>
<u>제18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u> <u>----제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u> <u>---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u> <u>-----.</u>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u>따라야</u> 한다.	② ----- ----- -----<u>협조하여</u> <u>야-----.</u>
<u>제19조(공사에 대한 감독) (생략)</u>	<u>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원안 제19조와 같음)</u>
<u>제20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u>	<u>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u>

의 <u>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u> 거나 <u>근무하였던</u> 사람은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u>제21조</u>(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략) <u>제22조</u>(다른 법률의 준용) (생 략) <u>제23조</u>(벌칙) <u>제20조</u>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24조</u>(과태료) ① <u>제21조</u>를 위반 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한</u> 날 부터 시행한다.	---<u>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u> <u>에 있었던</u>----- ----- -----. <u>제19조</u>(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원안 제21조와 같음) <u>제20조</u>(다른 법률의 준용) (원안 제22조와 같음) <u>제21조</u>(벌칙) <u>제18조</u>를----- ----- ----- ----- -----. <u>제22조</u>(과태료) ① <u>제19조</u>----- ----- ----- ----- -----. ②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이</u>----- --. 부칙 제1조(시행일) -----<u>공포 후 1</u> <u>년이 경과한</u>----- --.
--	---

<u><신 설></u>	<u>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신 설></u>	<u>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u>
<u>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u>	<u>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u> <u>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u>

<u>제3조</u>(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략)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u>제5조</u>(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안 제3조와 같음)
------------------------------------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사무소 및 연구원·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